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82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김정호 · 이수진 · 전은수
임미애 · 정성호 · 박 정
서왕진 · 김남준 · 김남희
이연희 · 안태준 · 허종식
박용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어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

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생략)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 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④ (생략)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제48조(과태료) < <u>신설</u> >	제48조(과태료)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② -----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 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 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 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 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 자대표에게 알리지 <u>아니한</u> 퇴 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u>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 자</u> 3. 4. (생 략) ② (생 략)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1. ----- ----- ----- ----- ----- ----- -----<u>아니하거나</u> <u>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u> <u>아니한</u>----- <삭 제>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 ----- -----.
--	---